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2년 11월 10일
-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최봉희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책임을 수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안 제1조~제3조)
 - 사회정착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이고 8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2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감 명령 대상자, 갇생보호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고, 서울시 11개 자치구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78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
----------	----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발의자: 이성수, 최봉희, 유승용
김지연, 우경란 의원 (5인)

1. 제안이유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보도선도 사업의 육성 책임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마. 사회정착 지원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11.08. ~ 11.15.):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큰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